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예천군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3.1.9. ~ 2023.1.10.	
건축종별	[] 신축, [○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예천군수 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				
	지번 111-10	관련지번 111-4, 111-11, 111-12, 112-8			
	대지면적 2,249.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계획관리지역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413.87㎡	건폐율 18.40%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2층		
	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		
	최고높이 11.22m	용적률 35.54%	연면적 799.24㎡	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설계·계획 분야	· 주민 휴식, 모임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외부공간을 계획, 주차장은 필요시에는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에코 블록 등으로 시공하는 것도 대안일 것으로 판단됨. · 장애인 주차공간 및 진입로 확보 요망. · 직원 및 민원인을 고려, 외부 또는 옥상공간에 휴게 및 쉼터공간 반영이 필요함. · 부속설비실인 기계실 위치가 배치상 남측, 안정된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실과 위치 조정이 필요 필요함. · 입면디자인이 통상적 미미한 형태로 입구 캐노피설치 등 공공건축물로서 상징적 입면디자인 및 평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요망.			
	경관·디자인분야	· 건물의 경우 직사각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. · 심의 대상의 센터건물은 기존건물(복지회관) 등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필요가 있음 계획상의 도면은 기존건물과는 매우 이질적인 이미지를 생성함. 따라서 형태적인 측면과 외관 색채계획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·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·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·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·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